

Client Alert

19 March 2020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시요:

Brian Chia
Partner
+603 2298 7999
brian.chia@wongpartners.com

Ee Von Teo
Partner
+603 2298 7810
eevon.teo@wongpartners.com

Eddie Chuah
Partner
+603 2298 7939
eddie.chuah@wongpartners.com

Sujintana Mongkolthanit
Senior Associate
+603 2298 7912
sujintana.mongkolthanit@wongpartners.com

Mynn Keng Loo
Associate
+603 2299 6512
mynnkeng.loo@wongpartners.com

기 소 예

부장, 한국기업지원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

감염병 예방 및 방지법(감염 지역 내 대책)규정 2020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 년 3 월 18 일에서 2020 년 3 월 31 일까지의 기간("통제 기간")동안 시행될 감염병 예방 및 방지법 (감염 지역 내 대책) 규정 2020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ct (Measures within the Infected Local Areas) Regulations 2020, "규정")을 발행했습니다.

정부 부처들도 이동 제한 명령("명령")의 영향을 명료화하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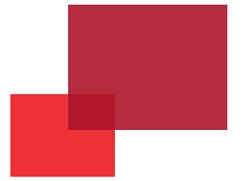
- (a) 총리실 (국가 안보 위원회)(Prime Minister's Department (National Security Council), "PMD")은 필수 서비스 및 사전 승인된 일부 비필수 서비스의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사안
- (b) 이민국(Malaysian Immigration Department, "MID")은 국경 통제와 관련된 사안
- (c) 국내 통상 및 소비자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 "MDTCA")는 리테일 부문과 관련된 사안
- (d)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MOT")는 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사안
- (e) 건설부(Ministry of Works, "MOW")는 건설과 관련된 사안
- (f) 고등교육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MOHE")는 고등교육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

(본 자료에서 (a) - (f)과 규정을 "추가 가이드라인들"로 통칭함).

1. 필수 서비스

규정은 필수 서비스의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했습니다:

- | | |
|--------------|--------------------|
| (a) 물 | (e) 육로, 해상 및 항공 수송 |
| (b) 전기 및 에너지 | (f) 은행 및 금융 |
| (c) 통신 | (g) 보건 및 의료 |
| (d) 우편 | (h) 소방 |



- | | |
|--|---|
| (i) 교도소 | (p) 라디오 및 TV 방송 |
| (j) 고형 폐기물 관리 및 공공 청소 | (q) e-commerce* |
| (k) 방위 및 보안 | (r) 야생동물 보호* |
| (l) 하수 처리 | (s) 이민국* |
| (m) 식품 공급 | (t) 관세청* |
| (n) 연료 및 윤활유의 생산, 정제,
저장, 공급 및 유통 | (u) 호텔 및 숙박* |
| (o) 선박 내 하역, 거룻배 운반, 하역,
수로 및 항공로 안내 및 보관,
원자재 벌킹 서비스를 비롯한
항구, 부두, 공항 서비스 | (v) 공공의 보건 및 안전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서비스라고
장관이 판단하는 서비스 |

**표시된 서비스는 2020년 3월 16일 발표된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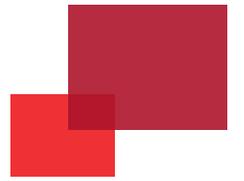
"관개" 및 "약국" 서비스는 확실히 명시되지 않았으나, (a)와 (g)에 각각 해당될 것입니다. 리테일(소매)은 업데이트된 리스트에서는 제외되었을 수 있으나, 명령에 "식품 공급망에 관련된 사업장 혹은 식품 판매 사업장"에 대한 부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장은 최소한의 직원 및 고객만이 사업장에 출입하도록 하여 통제 기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일반 행정)은 재택 근무가 요구됩니다.

2. 추가 가이드라인들

추가 가이드라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명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 (a) 보건부 국장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한, 통제 기간 동안 **비필수 서비스 제공자의 모든 사업장은 휴업**
- (b) 필수 항목 리스트(**부록 1** 참조)의 제품을 제조하는 **일부 제조 공장은 운영 지침(부록 2 참조)을 준수하여 통제 기간 동안 운영**이 허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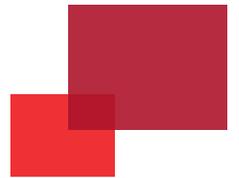


- (c) 아래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통제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내의 **이동이 제한됨**:
 - (i) 공무 수행
 - (ii) 필수 서비스 사무소, 그리고 보건부 국장의 승인을 받은 비필수 서비스 사무소 방문
 - (iii) 식품 혹은 생필품 구매, 공급 혹은 배달
 - (iv) 보건 혹은 의료 서비스
 - (v) 보건부 국장이 허가한 특별한 사유
- (d) 경찰서에서 서면으로 된 사전 허가를 발급받은 특별한 경우 (가족의 사망 혹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함)가 아닌 한, 통제 기간 동안 **주 간(Inter-state) 이동 금지**
- (e) 통제 기간 동안 종교,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사회 혹은 문화적 목적을 망라한 **모든 모임 금지** (결혼식 포함)
- (f)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통제 기간 동안 **장례식은 허용**
- (g) 외국에서 입국하는 **말레이시아 국민 그리고 외교관 비자 혹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i) 이민국 통과 전 건강 상태 확인, 그리고 (ii) 14 일 간 자가 격리 필요
- (h) **생필품을 운송하는 차량 (트럭 등)은 통제 기간 동안 운행이 가능**하나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행이 엄격히 금지
- (i) 비탈 보수 공사,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공사 및 위급 공사와 같이 공사가 지속되지 않으면 공공 및 환경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필수 공사가 아닌 한, 통제 기간 동안 **모든 건설 공사 금지**

국내 통상 및 소비자부(MDTCA)

MDTCA의 주요 가이드라인:

- (a) 유통 센터 (e-commerce warehouse, warehouse 서비스 지원)는 운영을 허용



- (b) 요식업 사업장은 dine-in 서비스는 금지되며, 엄격히 테이크아웃 혹은 드라이브스루만 허용됨
- (c) 식품 배달 서비스는 GrabFood 혹은 Foodpanda 와 같은 식품 배달 기업만 허용
- (d) 슈퍼마켓과 백화점은 생필품 공급만을 위한 점포만 운영을 허용
- (e) 리테일 사업자 (식품 및 생필품 판매)는 고객의 비합리적인 식품 및 생필품 구매를 관리할 것을 권고
- (f) 건물의 안전을 위한 공사 그리고 건설부 및 건설 산업 개발국(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모든 레노베이션 공사는 반드시 연기
- (g) 셀프 서비스 세탁소의 운영은 불가
- (h) 고객 콜센터, 보안 서비스, 폐기물 수집 서비스의 운영은 허용
- (i) 공급 통제법(Control of Supplies Act)에 의거하여 통제품(쌀, 설탕, 요리 기름, 밀가루)에 적용되는 관련 인허가 할당을 반드시 준수

건설부(M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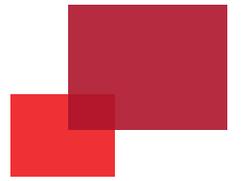
MOW 의 주요 가이드라인:

- (a) 통제 기간 동안의 건설 공사 면제 신청은 프로젝트 디렉터 혹은 거주자 엔지니어가 반드시 추천해야 함
- (b) 통제 기간 동안 건설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한 잠재적인 공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실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음

건설 혹은 프로젝트 개발 기업 (관련 모든 기업)은 관련 계약서들의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명령이 불가항력 상황으로 판단되어 불가항력 조항을 발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국(MID)

MID 의 주요 가이드라인:



- (a)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말레이시아 국민은 (i) 이민국 통과 전 건강 상태 확인, (ii) 14 일 간 자가 격리, 그리고 (iii) 통제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출국 금지하지 않는 한 통제 기간 중 말레이시아로 입국 불가
- (b) 유효한 고용 비자를 소지하고 그리고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만 고용주가 발행한 확인 레터의 검토한다는 전제 하에, 통제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로 입국이 허용됨. 입국한 외국인은 (i) 이민국 통과 전 건강 상태 확인, 그리고 (ii) 14 일 간 자가 격리 필요
- (c) 그 외 외국인들은 ((i) 유효한 고용 비자를 소지했으나 필수 서비스 종사자 아님, (ii) 관광객, (iii) 외국인 방문객) 통제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로 입국 불가

교통부(M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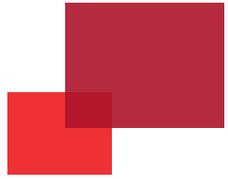
MOT 의 주요 가이드라인:

- (a) 말레이시아 국민 및 외국인에 부과된 여행 제한 적용의 전제 하에, 국내선 및 국제선은 운영 가능. 단, 통제 기간 동안 주간 이동 제한 및 말레이시아 국민의 해외 출국 금지 제한은 적용됨
- (b) 화물선 운영 가능
- (c) 크루즈선 운영을 제외한 말레이시아의 모든 항구는 운영 가능
- (d) 생필품 배송을 위해 South Thai Cargo rail 은 운영 가능

고등교육부(MOHE)

MOHE 의 주요 가이드라인:

- (a)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등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공립 대학, 사립 교육 기관은 휴교
- (b) 모든 교육 기관의 활동은 금지
- (c) 학생들은 본가 (혹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모든 학생들은 캠퍼스의 기숙사에 거주



3. 법적 책임

감염병 예방 및 방지법 1988 하의 위반에 대한 일반 처벌(본 사무소에서 2020년 3월 17일 발행한 자료 [영문](#) 및 [한글본](#) 각각 참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은 규정의 비준수에 대해서 최대 MYR1,000의 벌금 혹은 최대 6개월까지 징역, 혹은 둘 다를 부과할 수 있다고 처벌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 기업의 이사, 관리진, 비서진 혹은 기타 유사 업무 직원, 그리고 운영 관리를 지원하거나 관리를 담당할 임직원은 다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공동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처벌됩니다:

- (a) 본 위반은 본인의 지식, 동의 혹은 묵인 없이 발생됨, 그리고,
 - (b) 본인은 본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주의와 방안을 마련함
- 기업의 관리임직원은 추가 가이드라인들의 제한 및 요구 사항들을 주의깊게 숙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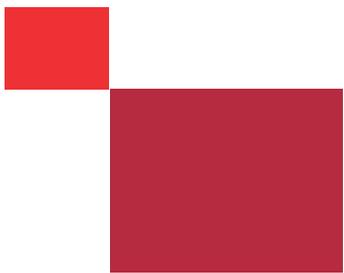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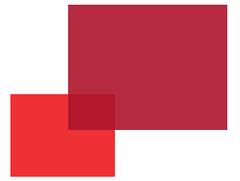
규정의 적용이 연장되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도 추가적인 안내를 발행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업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





부록 1

통제 기간 동안 운영이 허가되는 제조 활동

- (a) 식음료 (수입품 포함), 쌀, 설탕, 야채,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지방, 밀가루 및 모든 곡물, 빵, 물, 유제품 (우유, 영유아 분유 등), 양념 및 향신료, 커피 및 차, 통조림, 고기, 닭, 동물 사료, 과일 및 야채 가공품
- (b) 농산물 및 수산물 (수입품 포함), 생선, 해산물, 과일, 야채.
- (c) 가정용품, 세제, 소독제, 세정제, 개인 위생품, 화장지 및 티슈
- (d) 화재 방지 용품 및 마스크 / 고무 장갑 등 의료용품을 비롯한 개인 보호 용품
- (e) 약: 모든 의약품
- (f) 포장재 및 프린트 용품 (잉크 포함)
- (g) 의료 및 수술 장비
- (h) 의료 장비의 부품 (호흡기의 부품 등)
- (i) 오일 & 가스
- (j) 석유 화학 제품: PTA & PET resins, polyester fibres and filaments, polypropylene and polyethylene, ABS & MABS resin, maleic anhydride, PVC paste resins, expanded EPE, impact modifiers and processing aids, styrene monomer, styrene butadiene latex and polystyrene
- (k) 화학 및 화학 제품: 비료 및 살충제
- (l) 반도체 포함 전기 전자제품



부록 2

운영 지침:

- (a) 제조 활동을 위한 인력은 평소 인력의 50% 미만으로 낮출 것. 주요 제조 활동과 관련없는 일반 직원들은 "재택 근무"하도록 조치 할 것
- (b) 제조 공장의 생산은 내수 시장의 공급만을 위함
- (c) 통제 기간 동안 사업장/제조 공장에서 근무할 직원 리스트 ("**출근 임직원**")는 반드시 산업통상부(MITI)로 제출할 것. 기업은 출근 임직원이 반드시 사업장/제조 공장에서 거주지로만 이동하도록 할 것
- (d) 기업은 매일 공장 진입 시점에서 임직원의 열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측정된 열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보관할 것
- (e) 출근 임직원 중 발열을 보이는 직원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즉시 근처 보건부서나 정부 병원에 고지할 것
- (f) 출근 임직원은 보건부가 발행하는 가이드라인들을 준수할 것
- (g) 기업은 사업장/제조 공장의 입구 및 기타 적절한 장소들에 손 세정제를 구비하고, 출근 임직원들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조치할 것
- (h) 기업은 매 작업 시프트 전 사업장/제조 공장을 살균하고, 하루에 최소 3 번 이상 공동 장소, 로비, 엘리베이터, 카페테리아, 미팅룸, 기도처, 출근 임직원의 이동 차량, 사내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살균할 것
- (i) 기업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차량을 사용 전 매번 살균할 것
- (j) 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모범 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생산 장소, 카페테리아, 미팅룸, 기도처, 다목적홀 등에 시행할 것
- (k) 직원 중 Covid-19 에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생긴 경우, 기업은 동 직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며, 사업장들 살균 비용 및 기타 모든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것